4. 대구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○ 발의일자 : 2019년 7월 5일

○ 발 의 자 : 황순자 의원, 강민구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재우 의원,

김지만 의원, 송영헌 의원, 이영애 의원

○ 회부일자 : 2019년 7월 8일

○ 상정일자 : 제26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문화복지위원회(2019년 7월 22일) 원안 가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순자 의원)

#### 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들고,
- 보호자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□ 주요내용

- "아이돌봄서비스" 등의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-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(안 제5조)
-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·군 및 관련기관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-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구·군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창업)

#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**안 제1조**와 **안 제2조**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.
- **안 제3조**에서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시책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.
- **안 제4조**에서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등 아이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명시하였음.
- **안 제5조**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,
- **안 제6조**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·군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,

○ **안 제7조**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·군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
- 최근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 (만12세 이하)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도의 시행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,
- 대구시에서는 광역거점기관인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8개 구·군 지원을 통해 2,472가정 3,685명을 대상(2018년 기준)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음.
-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,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나는 등 향후에도 아이돌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,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임.

○ 다만, 아이돌봄 지원대상이 확대(중위소득 120% 이하→중위소득 150%이하)되었고, 아이돌봄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,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 조건 등 변동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### 5. 토론요지

○ 없음.

#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.

### 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#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.